

[별표 8]

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(제30조 및 제31조 관련)

1. 장비

구 분	장 비 명	규 격	단 위	수 량
정수장	탁도계(연속식)	0~10NTU	대	2
	전력품질측정기	디지털식	대	2
	추적자 시험 분석기	(불소이온)	식	1
	슬러지농도계	디지털	대	1
	수압계	연속식	대	2
	유량계	연속식	대	2
	표준체 및 진동기	0.15~2.0mm	식	1
	건조기	항온항습	대	1
	펌프효율 측정기	열역학적방식	대	1
	DO meter	멤브레인방식	대	1
	Jar tester 및 표준자(2L)	표준형	식	1
	유동전하측정장치	연속식	대	1
	침강실험장치	표준형	대	1
	입자수 측정기(연속식)	2~1,000 μ m	대	1
	SS/함수율 분석장치 (진공여과장치, Drying Oven)	표준형	식	1
상수도관망	관로탐지기	금속,비금속	대	1
	수압계	연속식	대	10
	유량계	연속식	대	3
	관두개측정기	초음파식	대	1
	누수탐사기	전자식	대	2
	비저항측정기	4-pin 방식	대	1
	피복손상탐지기	DCVG 방식	대	1
	비교유량측정기	D50mm 이하	대	1
	비교유량측정기	D75mm 이상	대	1

2. 기술인력

자 격 요 건	인원
가.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	1
나.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,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,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	2
다.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,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,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	3
라.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,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,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	3